

보도시점 2024. 4. 24.(수) 배포시점 배포 2024. 4. 24.(수)

방통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첫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이하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개정 법률의 수범자를 명확히 하였다.

※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원본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를 말함

둘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을 규정하였고,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부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담당자	주무관	임승은 (02-2110-1566)



현행	개정안
<p>< 신 설 ></p>	<p>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본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본을 국내 임시 서버에 저장하여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p> <p>②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p> <p>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2.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3.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